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공 무 원 인 사 기 록 · 통 계 및
인 사 사 무 처 리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공무원 인사기록·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효율적·합리적인 인사행정 환경의 조성을 위해 사망한 퇴직 공무원의 유가족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퇴직공무원 재임용 시 인사기록 이관 범위 명시(안 제10조제2항)

퇴직공무원 재임용 시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하는 인사기록 이관 범위를 ‘전자인사관리시스템 상 기록(인사 및 성과 기록)’으로 명시

나. 임명장에 대통령 직인·국새를 날인하는 임용권 위임 공무원의 범위 정비(안 제25조제3항)

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국새 날인 대상에 ‘3~5급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’을 포함

다. 인사발령사항 홈페이지 게재 등 관보 게재 규정 개선(안 제29조)

공무원의 인사발령사항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도록 게재방법을 확대하고,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게재범위를

조정할 수 있도록 함

라. 공무원 유족의 경력증명서 발급 청구 근거 마련(안 제32조제2항)

사망한 공무원의 민법 상 가족이 대상자의 공무원 경력 증명에 필요한
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

마. 기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등 규정 정비(안 제4조제1항제3호및
제4호, 제11조제3항, 별표 3, 별표 4)

공무원 임용예정자 신원조사회보서 등 첨부대상 범위 규정, 결격사유조회
회보서 중 ‘금치산·한정치산 선고사실에 관한 사항’ 삭제, 시험요구서
구비서류 중 ‘기능직’ 표현 삭제, ‘공무원 전력조사서’를 ‘공무원 전력
조회 회보서’로 변경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2021. 2. 22. ~ 2021. 3. 15.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공무원 인사기록·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

공무원 인사기록·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 중 “결격사유조회 회보서(금치산·한정치산 선고사실에 관한 사항)”을 “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확인사항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신원조사회보서(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해당한다)

② 임용권자,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,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·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(「정부조직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인사 및 성과 기록, 근무성적”을 “근무성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개인별 인사기록의”를 “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한 인사기록의”로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전력조사서”를 “전력조회회보서”로 한다.

제25조제3항 중 “공무원의”를 “공무원(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)의”로 한다.

제29조의 제목 “(관보의 게재)”를 “(관보 등의 게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의뢰”를 “의뢰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, 각 기관별로 게재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32조제2항 중 “공무원이”를 “공무원(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으로 해당 공무원과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)이”로 한다.

별표 3의 1의 비고란 중 “또는 기능직 국가공무원”을 “국가공무원”으로 한다.

별표 4의 1의 신규채용의 첨부서류란 중 “결격사유조회 회보서 1통”을 “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”으로 하고, 비고란 중 “금치산·한정치산 선고사실에 관한”을 “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확인사항이 포함된 것으로서”로 한다.

별표 4의 1의 신규채용의 신원조사회보서 1통 및 신원진술서 2통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	신규채용	신원조사회보서 1통	「보안업무규정」 제36조 및 「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」 제5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.
		신원진술서 2통	

별표 4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	전보	신원조사회보서 1통	「보안업무규정」 제36조 및 「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」 제5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 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 한다.
		신원진술서 2통	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개인별 인사기록) ① 개인 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4조(개인별 인사기록) ①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<u>결격사유조회 회보서(금치산</u> · <u>한정치산 선고사실에 관한</u> <u>사항이 포함된 것으로서 시장</u> · <u>구청장 · 읍장 또는 면장이</u> <u>발행한 것을 말한다)</u>	3. <u>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</u> <u>서류(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</u> <u>격사유 확인사항</u> ----- -----
3의2. (생 략)	3의2. (현행과 같음)
4. <u>신원조사회보서</u>	4. <u>신원조사회보서(보안업무규</u> <u>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</u> <u>대상자만 해당한다)</u>
5. ~ 14. (생 략)	5. ~ 14. (현행과 같음)
② <u>임용권자, 임용제청권자 또</u> <u>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</u> <u>때에는 병역, 장애 및 보훈에 관</u> <u>한 정보의 검증 · 확인을 위하여</u> <u>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</u> <u>(「정부조직법」 제2조제2항에</u> <u>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.</u> <u>이하 같다) 및 그 소속 기관으</u> <u>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</u> <u>수 있다.</u>	② <u>임용권자, 임용제청권자 또</u> <u>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</u> <u>때에는 병역, 장애 및 보훈에 관</u> <u>한 정보의 검증 · 확인을 위하여</u> <u>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</u> <u>(「정부조직법」 제2조제2항에</u> <u>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.</u> <u>이하 같다) 및 그 소속 기관으</u> <u>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</u> <u>수 있다.</u>

현행	개정안
<u>[대통령령 제24891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3호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]</u> 제10조(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) ① 공무원이 승진, 강임, 전출, 전임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, <u>인사 및 성과 기록, 근무성적 평정, 경력 평정, 가점 평정에 관한 서류 또는 파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.</u> ②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때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권자에게 그 공무원의 <u>개인별 인사기록의</u>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, 전 임용권자는 새 임용권자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 제11조(전력 조회) ①·② (생략)	제10조(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근무성적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----- ----- ----- -----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으로 작성한 인사기록의 ----- -----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제11조(전력 조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략)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<u>전력조사서</u>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④ (생략) 제25조(임명장 또는 임용장) ① · ② (생략)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「공무원임용령」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<u>공무원의 임명장</u>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. 제29조(<u>관보의 게재</u>)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, 승진, 전직, 기관간 전보, 전출, 전입, 정년퇴직, 명예퇴직 및 추서(追敍) 등의 인사발령 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<u>의뢰</u>하여야 한다. <후단 신	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전력조회회보서</u>----- ----- ----- ---. ④ (현행과 같음) 제25조(임명장 또는 임용장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무원(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)의</u> ----- -----. 제29조(<u>관보 등의 게재</u>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의뢰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</u>

현행	개정안
<u>설></u> 제32조(증명서 등의 발급) ① (생략) ② 임용권자(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임용권자를 말한다)는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<u>공무원이</u>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.	<u>지 등 홍보매체에 게재---</u>. 다만 <u>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, 각 기관별로 게재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.</u> 제32조(증명서 등의 발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공무원(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으로 해당 공무원과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)의 ---.

현행				개정안			
[별표 3] 각종 시험 요구서의 구비서류(제13조제3항 관련)				[별표 3] 각종 시험 요구서의 구비서류(제13조제3항 관련)			
순번	시험종류	구비서류	비고	순번	시험종류	구비서류	비고
1	경력경쟁채용시험등	이력서 1통 최종학력증명서 1통 경력증명서 1통 자격증 또는 면허증 1통	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직 또는 기능직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이력서는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로 같음하고, 그 밖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으며, 최종학력증명서, 경력증명서,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은 채용 요건인 경우에만 필요함	1	경력경쟁채용시험등	이력서 1통 최종학력증명서 1통 경력증명서 1통 자격증 또는 면허증 1통	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이력서는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로 같음하고, 그 밖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으며, 최종학력증명서, 경력증명서,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은 채용 요건인 경우에만 필요함
[별표4] 인사발령을 위한 첨부서류				[별표4] 인사발령을 위한 첨부서류			
번호	발령구분	첨부서류	비고	번호	발령구분	첨부서류	비고
1	신규채용	⋮	⋮	1	신규채용	결격사유조 회보서 1통	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확인사항이 포함된 것으로서 시장·구청장·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.
		⋮	⋮			⋮	⋮
		⋮	⋮			⋮	⋮
		신원조사 회보서 1통	「보안업무규정」 제33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.			신원조사 회보서 1통	「보안업무규정」 제36조 및 「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」 제5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.
		신원진술서 2통				신원진술서 2통	
		⋮	⋮			⋮	⋮
12	전보	신원조사 회보서 1통	「보안업무규정」 제36조 및 「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」 제5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.	12	전보	신원조사 회보서 1통	「보안업무규정」 제36조 및 「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」 제5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.
		신원진술서 2통				신원진술서 2통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1 - 8311